

KISDI

Premium Report

GDPR시대 개인정보정책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대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GDPR시대 개인정보정책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조 성 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 대 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요약문

1. 서론	3
2. 기업에 영향을 주는 GDPR 주요 조항과 기업 대응 동향	7
3. GDPR 관련 정부의 대응 과제 및 현황	15
4. 향후 과제	23
참고문헌	29

GDPR시대 개인정보정책의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요약문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echo@kisdire.kr, 043-531-4090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학사·석사

*럿거스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민대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dhmin@kisdire.kr, 043-531-4298

*성균관대 경제학과 학사·석사

*아리조나대학교 경제학 박사

2018년 5월 25일 발효된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GDPR 적용 범위에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제3국가·국제기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국가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법제 확립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시대 GDPR의 의미와 영향, 그에 따른 국내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변화 방향 등을 살펴본다. GDPR은 동의철회권·정보이동권·삭제권 등을 보장하여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강화하고 ‘개인주도’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환기시킨다. 또 개인정보 영향평가, D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EU 역내 대리인 지정 등 기업 책무를 강화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IT 인프라 구축을 제도적으로 권장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개인정보 정책 방향은 GDPR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국내 법제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GDPR을 모범적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GDPR에 상응하는 제도 개편이 우리 기업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대응도 필요하다. 또한 GDPR 발효를 계기로 더욱 촉진될 ‘개인 주도의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원활히 수용하는 제도 마련과 법적 근거 확립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1. 서론

◆ 디지털 시대 GDPR 발효의 의미

- '18년 5월 25일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발효
 - GDPR은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써 28개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 세계 기업에 적용되는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임
 - 전문(recital) 총 173개 조항, 본문 총 11장 9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주체의 권리(열람청구권, 정정·삭제권, 정보이동권 등), 정보처리자의 책무(DPO(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 등이 포함됨
- 글로벌 ICT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자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방향성 제시
 - 소수의 글로벌 ICT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을 완화하는 국가 수준의 대응전략으로 주목됨
 - 또한 EU내 법제정비로 원활한 정보 이동과 기업의 관련 활동 뒷받침 등 새로운 산업 환경에 필요한 변화임을 내세움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 이외에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이라는 새로운 방향성 제시
 - 개인의 인격권 가치가 부여된 프라이버시권이 디지털 편의 및

경제재로서 ‘거래’ 가능한 권리로 전환하고 있는 시대 변화를 반영함

- 개인정보 활용주체를 기업·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의 정보 활용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강화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선도적인 법제도 기준 제시
 - GDPR 적용범위를 EU 회원국 이외에 EU 시민의 정보를 취급하는 제3국가·국제기구에까지 확대하고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디지털 시대의 심화된 글로벌 환경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응 방향을 보여줌

◆ GDPR에 따른 국내 개인정보 관련 이슈

- 고도화된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제 준비의 필요
 - 신기술·신산업 개발·창출에 무한 생성되는 디지털 데이터를 어떻게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의 수준이 달라짐
 - 이에 세계 각국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을 지키면서 활용가능한 데이터 범위의 확장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 유럽연합의 디지털 싱글마켓 GDPR 발효, 일본의 익명·가명정보 개념 도입, 영국의 midata 등
-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 법제로 기업 등(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대해 규율하는 한편,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두는 현행법의 기초, 여러 관련법에 따른 법체계 정합성 부족, 불분명한 법적 개념에 따른 비즈니스 불확실성 등이 기업의 데이터 활용의 장애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의 데이터 활용 정책이 현행법과의 부정합 논란을 일으키기도 함
- GDPR의 적용 범위는 유럽회원국 이외 유럽시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제3국·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므로 국가차원의 GDPR 대응 필요
 - GDPR은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의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와 높은 수준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럽시장에 진출한(혹은 진출계획인) 국내 기업은 GDPR에 준하는 개인정보 처리 정책을 갖추어야 함
 - GDPR은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국가의 개별 기업에게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절차의 간소화를 보장함
- * 적정성 평가는 대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가 GDPR에 준하는 수준인지를 평가하는 것
- 기업의 GDPR 대응 부담과 개인정보보호 책무 강화로 인한 신산업 위축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
 - 유럽시장과 관련하여, GDPR 의무 준수를 위한 기업의 비용 증가 및 법해석의 모호함으로 인한 범위반 우려 등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있음

- GDPR 발효를 계기로 국내 비합리적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규정준수를 위한 기업·기관의 IT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구현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
 - * IT 컴플라이언스란 법제도에서 요구하는 규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IT 인프라·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작업을 말함
- GDPR의 신설 법조항이 디지털 환경에 맞는 효율적 개인정보보호 수단으로 판단되면 국내법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기업의 정보 활용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GDPR의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정과 국내 개인정보의 국외 이동 확산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에 대응할 필요
 - 고도화된 ICT의 초연결성으로 인해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미치지 못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하고 있음
 - GDPR은 제3국·국제기구로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제재를 명시함
 - 국내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책 마련을 요구하거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획득과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 국외 이전에 대한 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총론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17조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63조)

2. 기업에 영향을 주는 GDPR 주요 조항과 기업 대응 동향

◆ 기업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GDPR 주요 조항¹⁾

- OECD 프라이버시 8원칙에 기초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규정(제5조)
 -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목적 제한, 수집정보 최소화, 정확성, 보관기간 제한, 무결성과 기밀성, 책임성 등을 규정함
 - ‘목적 제한’*과 관련하여 국내법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국내법에 있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라는 단서의 문구 해석의 모호함 때문에 해당 조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4항)은 거의 사문화되어 왔음. 최근 해당 조항을 ‘비식별조치 후 활용가능한 정보’의 법적 근거로 재해석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주목 받음
 - * 목적 제한 예외 조항과 관련하여 GDPR은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역사 연구 또는 통계 목적”으로, 국내법은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규정함
-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로서 동의(consent) 조건 및 철회 등을 규정(제4조(11), 제7조)
 - GDPR에서 ‘동의(consent)’는 “진술에 의하거나 명확한 긍정적 행위(clear affirmative action)에 의한 분명한 의사표시”이며, ‘명확한 긍정적 행위’란 “정보주체가 의도적인 행동을 취하여 특정한 (데이터) 처리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1) 국내법과의 차이에 대한 것은 박노형 외(2017)를 주로 참조함

- 즉, 동의 의사를 표하기 위한 구체적인 말 혹은 행위를 끌어내지 못하는 형식으로는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음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쉬운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어야 함
 - ※ 박노형 외(2017)는 국내법에 '동의에 대한 정의' 조항은 없지만 '명시적 동의로 해석가능하다고 봄. 그렇더라도 "자유로운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고지를 받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동의를 정의하고 있는 GDPR과 비교됨 동의철회권과 관련해서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제2항 4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 정보주체의 권한으로 삭제권, 정보이동권,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제한 등을 신규 도입
 - 삭제권(제17조)은 정보주체가 원할 때 자신에 대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이며, 삭제요구 권한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 받은 제3자에까지 미침
 - ※ 국내법은 삭제권을 보장(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37조제4항, 제21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2)하고 있으나 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에 대한 파기·삭제 의무 조항은 없음
 - 정보이동권(제20조)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이전해 줄 것을 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 이로써 특정 기업·기관이 독점해 온 개인에 대한 정보 처리 권한을 정보주체인 개인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동의를 획득한' 활용가능한 개인정보를 증가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 프로파일링을 포함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제22조) 조항은 정보

주체에게 법적 효과 혹은 그와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평가와 결정이 자동화된 처리에만 근거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임

● GDPR 제4장은 주요 수범자인 컨트롤러와 프로세서*의 의무를 규정

* 컨트롤러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결정”하는 자이고 프로세서는 “컨트롤러를 대신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제4조(7)(8)).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수범자인 ‘개인정보처리자’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써 이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를 구분하지 않고 정보처리자로 통칭함

- 정보처리자의 기본 책임, 개인정보보호 중심 디자인 및 기본설정, 처리활동 기록, 개인정보 보안, 개인정보보호 영향 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동규약과 인증 등에 관한 의무가 명시됨(제24조~제43조)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업대상 GDPR 안내에 따르면, 특히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 지정, 개인정보처리 활동 기록·유지·관리, 역내 대리인 지정 등이 기업 대응 우선 사항임

●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DPO를 공식적으로 지정할 의무(제37조~제39조)

- DPO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전문지식 및 실무 능력을 갖춰야 하며 여러 사업자가 단체로 한 명의 DPO를 지정할 수도 있음
- DPO 지정 의무는 ①공공기관·기구에 의해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경우, ②정보주체에 대한 정기적·체계적인 대규모 모니터링 필요가 있는 처리 작업으로 구성되는 경우, ③특정범주의

개인정보(민감정보 등) 혹은 범죄 경력·행위에 대한 대규모 처리
작업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함

- 중소기업의 경우 충분한 자격을 갖춘 DPO 확보나 비용이 부담될 수 있음

※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조항이며 자격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GDPR과는 달리 자격 요건으로 '전문지식·실무능력' 등은 언급되지 않고, '지위 수준'(예, 4급 이상 공무원, 사업주(대표자), 임원 등)으로만 규정됨

- 처리활동 기록 의무(제30조)

- 정보처리자가 GDPR 준수 여부를 입증할 의무가 있으며 처리활동 기록 의무는 규정준수 의무 입증을 위한 것임
- 기록 의무에는 ①정보처리자와 그의 대리인, DPO의 이름과 연락처, ②처리 목적, ③정보주체 범주와 개인정보 범주에 대한 설명, ④개인정보가 공개되었거나 공개될 수령자 범주 등이 포함됨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50인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조직은 의무대상에서 제외됨

- EU 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정보처리자의 경우 대리인지정 의무(제27조)

- 역외의 정보처리자인 경우 EU 역내에 대리인(representatives)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함

※ 처리가 간헐적으로 수행되거나 특정범주의 개인정보 혹은 범죄 경력·행위에 대한

대규모 처리를 포함하지 않거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험 초래가능성이 낮거나 공공기관·기구인 경우는 예외임

● 일련의 시정절차와 함께 혹은 시정절차를 대신하여(제58조)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제83조)

- 개별사건마다 회원국의 각 감독당국이 시정조치* 혹은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함

* 시정조치 권한에는 경고, 견책, 준수명령, 통지 명령,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 이전 중지 명령 등이 포함됨(제58조제2항)

〈표〉 GDPR 제83조에 명시된 과징금 규모와 부과 대상 행위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1천만 유로 이하의 과징금 또는 사업체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2%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제83조제4항)	-정보처리자의 의무 위반(8조, 11조, 25조~39조) -인증기관의 의무 위반(42조~43조) -감시기관의 의무 위반(41조4항)
2천만 유로 이하의 과징금 또는 사업체인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전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4% 이하의 과징금 중 높은 금액(제83조제5항)	-동의 조건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 위반(5조~7조, 9조) -정보주체의 권리 위반(12조~22조) -제3국·국제기구로 개인정보 이전 위반(44조~49조) -회원국의 개별법 위반(9장) -감독당국의 명령, 개인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 이동 중지 미준수(58조2항) -접근 기회 미제공(58조1항)

자료: GDPR 제83조, 박노형 외(2017)

※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반 행위에 따라 최고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제70조~제73조) 최고 5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를 부과함.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된 위반 행위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제34조의2)

- GDPR 제5장은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에 대해 규정
 - EU 회원국 내 개인정보를 이전받게 될 제3국·국제기구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수준이 GDPR에 준한다고 평가(적정성 평가)되면 해당국가기구의 개별 정보처리자는 명시적 동의 혹은 별도의 안전장치 의무 없이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가능함(제45조)
 - 국가 수준의 적정성 평가와는 별도로 개별 기업(정보처리자)이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역외이전이 가능함(제46조)
 - ※ 안전장치에는 ①공공기관의 법적 구속력이 있고 집행가능한 문서, ②구속력이 있는 기업 규칙, ③EU 집행위 승인을 받은 정보보호 표준조항, ④승인된 행동 규약, ⑤인증제도 등이 포함됨

◆ 글로벌 ICT 기업의 GDPR 대응 현황

- GDPR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정 및 IT 컴플라이언스 정비
 -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 기업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홍보함

〈표〉 글로벌 ICT 기업의 GDPR 준비 현황

ICT기업	GDPR 준비사항에 대한 기업별 소개 내용
구글	사용된 정보주체의 정보 투명성 향상, 사용자 통제권 향상, 정보이동성 향상, 미성년자 대상 부모의 동의절차와 도구 개선, 사업 고객파트너 지원,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위한 IT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페이스북	정확한 개인맞춤형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 프로필 공개설정과 별도로 정치성향종교 등 민감정보 사용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 얼굴 인식 기술 허용 여부 등에 대한 선택 기회의 지속적 제공과 정보 접근·삭제·다운로드 도구 향상 및 10대 이용자 보호 장치 등
애플	개인정보 수집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즉각 알림 기능 추가, 사용자가 직접 자기정보를 열람·수정·삭제할 수 있는 사이트 제공(Apple ID Data & Privacy), 사용자가 애플에 자기정보의 정정·삭제·열람이동 요청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 주요 글로벌 ICT 기업과는 달리 세계 각국의 기업 중 약 29%만이 GDPR 발효 후 관련 규정을 무리 없이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SACA), 2018)
- EU 역내 기업 역시 약 34% 정도만이 GDPR 준수가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남(vpnMentor, 2018)

◆ 국내 기업의 대응 현황

- 국내 통신, 컴퓨터·정보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의 유럽시장 진출은 증가 추세
 - '17년 3월 현재 국내 해외진출 스타트업 중 유럽진출 비중은 8.1%이며, 그 중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비중이 약 56%임(KOTRA, 2018)

- 정부 차원에서 유럽시장 진출 혹은 계획 중인 중소기업·스타트업의 GDPR 대응을 지원
 -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GDPR 가이드라인 발간, 중소기업 대상 GDPR 대응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국내 기업의 GDPR에 대한 이해와 준비 정도는 낮은 수준
 - Veritas(2017)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61%가 GDPR 발효시점에도 충분한 대응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함
 - 특히 GDPR의 기업 책임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DPO지정, 개인정보 영향 평가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 '17년 하반기 기준 설문조사 응답기업의 57%만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처리활동을 기록하고 있고, 52%가 DPO 임명 혹은 임명 예정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영향평가 대상 기업 중 27%만이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중으로 나타남(한국인터넷진흥원, 2017)
 - 정보주체 권리 강화와 관련된 동의요건 강화 및 정보이동권 보장 등을 위한 IT 컴플라이언스 대응도 부족함
 - ※ 한국인터넷진흥원(2017)에 따르면, 해당기업의 40%만이 동의요건 강화를 완료한 상태이고, 그밖에 실행 예정이 43%, 예정 없음이 17%임. 정보이동권과 관련하여 57%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함
 - 그밖에 유럽시장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GDPR 효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법률적 해석의 어려움, GDPR 준수를 위한 시스템 정비 비용 부담, 대응인력 확충 부담 등을 토로함(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3. GDPR 관련 정부의 대응 과제 및 현황

◆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과 기업의 의무 이행 현실화

- 현행 법제는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법제 명확화에 따른 비즈니스 확실성 실현도 부족하다는 평가
 - 개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자기통제권 강화와 관련하여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가 필요함. 현행법에는 ‘식별자’에 대한 명시적 정의가 없고 ‘식별가능성’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부가설명도 없음
 - 반면에 GDPR에서는 ‘온라인 식별자(online identifier)’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으며(Recital 30), ‘한 개인의 식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보처리자 등이 개인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사용할 만하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reasonably likely to be used)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함(Recital 26)
- 개인의 권한 및 기업의 책무 실현을 위한 제도 신설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현실화하려는 정책 추진

담당부처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향상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 개인정보 보유량과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인 경우 사이버 보험 가입 의무화 - 과징금 부과 규모에 대한 법령 간 정합성 확보 및 국제 수준으로 상향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처리 정지권 신설, 개인정보 열람·제공 요구, 이용내역 통지, 동의 철회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계획 -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 도입 및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등으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할 계획

자료: 개인정보보호 실천가이드(2018)

- 긍정적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기업의 의무 실현에 대한 감독절차를 분명히 하는 한편, 기업의 정보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반대급부도 필요함.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길이 막힌 상태에서 높은 강도의 관리 의무는 데이터기반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정 효과로 나타날 뿐임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국제협력 및 대응 필요

- GDPR의 개인정보 역외 이전 규정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 지원
 - 정부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계획 중인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해 GDPR에서 요구하는 ‘적정성 평가’를 준비 중임
 - '16년 10월 적정성 평가에서 적격성 요건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완전한 독립성(예산, 인사, 조직 등)과 집행권한(조사권, 제재권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불가 통보를 받음

- ※ GDPR 제6장은 GDPR 적용 대상국가에서 집행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제의 담당부처가 여러 부처로 나누어져 있으며(통합적 감독기관 부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통합적 감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지 못함
- '17년 3월 단계적 추진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부분적정성 결정을 추진 중임
 - ※ 정부의 부분적정성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는 우려를 표명하고 전체적정성 평가 추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함('18.06.21). 부분적정성은 통합적 집행권한을 가진 독립적 감독기관 부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럽진출 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고착화시킬 수 있음을 제기함
- 그 밖의 국제협력 추진 및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대응
 - '17년 APEC의 회원국 간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CBPR)에 대한 가입 승인을 획득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 CBPR은 APEC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자율 인증제도이며 한국 이외에 미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가 가입되어 있음. 애플, HP, IBM 등 약 20여 개의 기업이 CBPR 인증을 받음
 - 중국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규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17년 6월 발효한 중국의 '사이버보안법'에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있으며 '18년 5월 발표한 '데이터기밀보호법'에는 GDPR의 적정성평가에 준하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보안평가(안)을 담고 있음
 - * 공공통신·정보서비스, 에너지, 교통, 금융 등 핵심정보기반시설 관련 정보(개인정보 포함)의 중국내 저장 원칙을 규정함. 업무상 필요에 의해 해당 정보의 국외 제공이 필요할 때는 중국 정부가 규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함
- 해외 기업에 의한 국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대응 조치도 필요

- 우리 정부는 국내시장 진출 해외사업자를 통제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 ※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해외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관·제공 의무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임
-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주도로 의결된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18.06.26.)에 데이터 주권강화를 위한 국외 이전 중단 명령권 등 보호조치 의무 신설 등이 포함됨

◆ 국내 개인정보 법제 정비 논의와 GDPR 효과

- 빅데이터 시대에 발맞춰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정책을 추진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신산업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이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옴
 -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공표(‘16. 6), ‘개인정보 통합해설서’ 공표(‘16. 7)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기준 및 지원을 위한 관리 체계 마련(‘16.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 10월 시행) 등
 - 그러나 관련 법제 정비 미비를 비롯해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비식별 정보의 활용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등으로 원활한 이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 관계 부처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실행 전략을 모색함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규제·제도 해커톤('18. 4)을 거쳐 가명정보 개념 도입 및 활용 범위 규정 등 합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의결('18. 6)을 통해 통신·의료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확대 등

●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및 개인주도의 정보유통시스템 도입 등으로 개인정보 활용 전략 방향 선회

- 유럽 등의 MyData 정책, GDPR 영향 등에 따라 개인의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여 '동의' 기반의 활용가능한 개인정보 확대를 꾀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

- '16년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에서 K-MyData* 도입 계획이 언급되었으며 '18년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데이터 주권 찾기(MyData)'로 구체화됨

*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주도의 데이터 유통을 추구하는 것이며 "특정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의 동의하에 다른 기업에게 제공,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임. 현재 영국의 midata, 프랑스의 Mesninos, 핀란드의 MyData, 일본의 정보중개기업제도 등이 실행 혹은 실행 준비에 있음

- MyData는 영국 등 유럽이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동안 별도의 법조항 근거를 마련하거나 제도 도입을 먼저 추진하였다가 이번 GDPR의 정보이동권(제20조) 신설로 유럽 전역에 미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이로써 EU 회원국 전체에 관련 제도 도입 검토가 촉진될 전망이다

* GDPR 발효 전 영국은 이미 midata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3년 「기업 및 규제개혁법(the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13)」에, 프랑스는 「디지털공화국법(Bill for Digital Republic)」('16.10)에 고객 요청에 따른 고객 데이터의 제3자 접근을 허용하는 기업 의무를 명시하였음

- 국내의 경우 '18년 2월 발의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처음 법적근거 마련이 시도되었는데, 제43조제5항에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해당 개인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2018.02.18.발의)의 제43조 제5항: ⑤ 누구든지 자신으로 인해 생성된 데이터를 보유하는 국가기관등, 법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 법인, 기관 및 단체는 이를 정보처리장치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국회에서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GDPR에 상응하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 강화 및 기업의 책무 요건 강화 등을 반영
 - 특히 통합적·독립적, 그리고 충분한 권한이 부여된 개인정보보호 감독당국(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법제화, 개인의 권한 강화를 위한 세부 권한 명확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확대, 개인정보 보호법제 통합 등 유럽위원회의 적정성 평가 시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GDPR에 준하는 개정 방향이 제안됨

〈표〉 2018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현황

대표발의 (날짜)	주요 내용
김정우 (18.3.9)	·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비식별 정보의 활용 근거를 마련 하는 한편, 비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생성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진선미 (18.3.5)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 하고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 등과 관련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 하는 내용이 포함됨: (주요내용) ① 동의개념 명확화, ② 정정 및 삭제 청구권 개선, ③ 프로파일링 및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④ 가명정보의 정의와 처리조건 신설, ⑤ 민감정보의 보호범위와 처리조건 조정, ⑥ 제3자 제공에 대한 예외적 허용 요건 추가, ⑦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 명확화(「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 삭제), ⑧ 집행 및 감독기구의 통합·일원화, ⑨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 확대(공공기관 외 금융·의료·통신업체 등도 포함) ⑩ 기타
오세정 (18.3.5)	· EU의 GDPR을 참고하여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하는 내용을 신설함

자료 : 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

〈표〉 2018년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현황

대표발의 (날짜)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장 (18.5.28)	· 이용자의 정보 접근권한 등 이용자보호조치 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권한 을 부여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명시함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 금지 및 대통령령으로 자격요건을 규정할 것을 명시함
박선숙	·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 상태를 명확하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표발의 (날짜)	주요 내용
(18.5.17)	제공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을 때 등급을 고지하는 개인정보 활용범위 등급제 를 제시함
이찬열 (18.4.25)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신정민 (18.3.7)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 식별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비식별조치 후)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진선미 (18.3.7)	·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일원화 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및 감독의 주체 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변경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을 제시함
오세정 (18.3.5)	· 가명정보의 활용 및 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공한 익명정보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 하는 내용을 포함함
고용진 (18.2.28)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액 기반 과징금의 상한 을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 원 이하로 상향 하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변재일 (18.2.28)	·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정액 과징금 10억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함
추혜선 (18.2.6)	· 정보통신서비스 수탁자 위탁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전화 등의 개별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 에만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 하는 것을 제안함

자료 : 정부입법지원센터(lawmaking.go.kr)

4. 향후 과제

◆ GDPR의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

- '18년 5월 말 발효된 GDPR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봐야할 시점
 - GDPR 발효 초기인 현재, GDPR이 글로벌 ICT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보다 엄격한 GDPR 기준에 대응할 투자비용과 기술력·인력을 앞세워 시장 독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 유럽개인정보보호당국 등은 의견서에서 GDPR 실현을 위해 ICT 서비스기업의 제도 개정 이외에 기술적 조치 및 시스템 구축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위한 인력 및 투자비용 부족 등을 토로함
 - GDPR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한 인식 및 의지 부족으로 한동안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 또 GDPR의 정보이동권을 비롯한 자기정보통제권이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고도화된 ICT 환경에서 디지털 개인정보 대부분이 타인의 개인정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그럼에도 세계 각국의 GDPR 대응을 주시하고 정부차원의 대응을 지속할 필요
 - 세계 각국에서 GDPR 조항 해석,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GDPR 적정성 평가 참여 등 국가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고 있음

- 개인정보 역외이전과 관련하여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 등 11개 국가가 적정성 결정을 받고 정보이전 혜택 대상이 되었으며 일본도 최근 '상호 적정성' 채택을 '18년 가을까지 마무리 짓는데 최종 합의함
- 우리정부 역시 중소기업 대상의 GDPR 교육과 법령에 대한 Q&A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18년 말 적정성 채택을 목표로 유럽위원회와 상호 협력적 논의를 지속하고 있음

◆ GDPR의 개인 프라이버시권 강화 방침에 대한 대응

- 국내법이 우선이되 GDPR이 제기하는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선도적 방향을 검토하고 긍정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는 강력하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낮고 법제 준수를 위한 IT 컴플라이언스 구축은 미비하며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서비스의 장애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삭제권, 동의철회권, 정보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 제한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GDPR 조항을 검토하고 현행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한 도입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함
 - 이와 함께 정보주체 권한 구현을 위한 IT컴플라이언스 구축 의무를 명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관련 법제 일원화, 독립적·통합적 개인정보보호감독 기관 등이 포함된 기발의된 입법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와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의 활용주체(정보처리자)를 기업·기관에서 개인에게로 확대하는 법제 확립을 적극 추진할 필요
 -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부담 감소, 개인정보 오·남용의 효과적인 방지, 정보주체의 신뢰에 기반한 유통·활용가능한 데이터 확대 촉진 등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MyData제도 정립 및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 법제화와는 별도로 정부는 '18년 금융 분야를 포함한 2개 분야에서 먼저 MyData제도에 대한 대규모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2년까지 10개 이상 분야로 확대할 계획임
 - 최근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제를 현행 신용정보법에 신설·포함시킬 계획*을 밝혔으나('18.07), 신규 제도는 효율적인 법 준수 및 감독·관리와 융합산업 촉진 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 현행 신용정보법에 개인이 자신의 금융 정보를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을 신설·포함하는 내용임 그러나 데이터산업 고도화에 따른 분야 간 데이터 통합·활용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일반법 차원의 법제 정비가 요구될 것이며, 유럽은 이미 일반법(GDPR) 근거를 마련함

◆ 디지털 시대 기업의 데이터 활용성 향상을 위한 대응

-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축시키는 독소 조항을 개선할 필요

- 개인정보, 동의, 비식별화(혹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등 주요 개념의 범위와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 기업의 법제도 준수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법제 및 감독기관 일원화 등은 기업의 데이터 처리 시 중복된 여러 법의 검토나 담당기관 대응에 드는 비용·시간·인력 부담을 감소하는데 기여함
- 개인정보 처리 위반 시 벌금과 함께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형사처벌을 없애는 대신 위반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활용하되 과태료의 수준을 높이는 등으로 제재 효과를 향상할 것을 제안함
- 국가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럽위원회와의 협의가 유럽 법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한 보호 내에서 우리 기업 활동에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
 - 기업의 유럽역외 데이터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GDPR 적정성 평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개인의 (자기정보) 권리 보장을 넘어서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해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균형 있는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여러 GDPR 조항에서 언급되는 개별 유럽회원국의 임의재량권이 특정 유럽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이 진출해있는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이드라인 및 법률 지원, 유연한 시정절차 합의 등 국가차원의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특정 소수 기업에 의한 데이터 독점을 해소하고 데이터 유통·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
 -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대기업·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고객 정보(개인정보)가 스타트업·중소기업으로 원활하게 유통되어 신산업·신서비스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법적으로 보장되는 비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동의하에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 개인이 자신의 정보 유통·활용에 관여하는 MyData제도는 동의기반의 개인정보 유통구조를 확립하고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가능성을 향상시키며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여 데이터 독점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임
 - 비식별 정보 활용은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정보 처리에 대한 기관기업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며, 따라서 보안수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IT컨플라이언스 구현에 대한 책무가 규정될 필요가 있음
 - GDPR의 가명·익명정보의 개념, 동의에 대한 정의, 그 밖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개별 권리와 실행의무 규정,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 등에서 향후 법제 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봄
 - 법제도 개선과 함께 투명한 유통시장 형성도 중요함. 현재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데이터 유통구조는 데이터 품질 및 가격 경쟁 구도의 저하와 시민사회의 불신 초래 등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음

참 고 문 헌

- 관계부처 합동 (2016),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 관계부처 합동 (2017),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18.6.26.),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결안건.
- 경실련 보도자료(2018.06.21.), “정부의 EU 개인정보 보호수준 적정성 평가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07.19.),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 박노형(2017), “EU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중심으로”, 박영사.
- 보안뉴스(편찬), (2018), “개인정보보호 실천가이드 vol.8:개인정보보호의 미래”, PIS PAIR 2018, 보안뉴스.
- 조성은(2017), “개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의 정보 활용성 향상 전략”, 프리미엄 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2017.06), “중국 사이버보안법 관련 법규 해설”
- 한국인터넷진흥원(2017), “GDPR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소개”, 우리기업을 위한 GDPR 세미나(2017.12.11.) 발표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 “우리 기업들의 GDPR 대응현황”, EU GDPR 대응 포럼 (2018.4.11.) 발표자료.
- Purtova, N. · 김미리 · 권현영(2017), “빅데이터 변화 이후에도 개인 정보의 재산권적 성격은 타당한가?”, 《경제규제와 법》, 제10권제2호, pp.223-235.
- “GDPR 원문”,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6R0679&from=EN>
- “GDPR 번역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pipc.go.kr/>).
- 제29조 작업반(2018). “Guidelines on consent under Regulation 2016/679

- (동의에 관한 가이드라인) 번역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pipc.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GDPR 안내”, https://www.kisa.or.kr/business/gdpr/gdpr_tab1.jsp
- Egan, E.(2018.04.17.), “Complying With New Privacy Laws and Offering New Privacy Protections to Everyone, No Matter Where You Live”, <https://newsroom.fb.com/news/2018/04/new-privacy-protections/>
- ISACA(2018), “GDPR: the End of the Beginning”, ISACA 보고서.
- KOTRA(2018),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와 대응과제”, Global Strategy Report 18-002, KOTRA.
- Magge, T.(2018.06.19.), “GDPR과 유사한 중국 데이터 기밀보호법 5월 발효”, ITworld, <http://www.itworld.co.kr/news/109694>
- 유럽위원회 보도자료(2018.07.17.)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agreed to create the world's largest area of safe data flows”,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8-4501_en.htm
- Malcolm, W. (2018.05.11.), “Our preparations for Europe’s new data protection law”, <https://www.blog.google/outreach-initiatives/public-policy/our-preparations-europes-new-data-protection-law/>
- Veritas(2017), “2017 Veritas GDPR Report”, <https://www.privacyitalia.eu/wp-content/uploads/2017/09/gdpr-report-en.pdf>
- Veritas 보도자료(2017.05.16.), “베리타스 보고서, 기업들 유럽 일반정보 보호법 위반 시 심각한 비즈니스 영향 우려”, <https://www.veritas.com/ko/kr/news-releases/2017-05-16-veritas-study-organizations-worldwide-fear-non-compliance-with-new-european-union-data-regulation-could-put-them-out-of-business>
- 개인정보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 정부입법지원센터(<http://lawmaking.go.kr>)

애플 홈페이지 프라이버시 정책 안내 “Privacy Governance”, <https://www.apple.com/legal/privacy/en-ww/governance/>

애플 홈페이지 “Allowing Your Users to Manage Data Stored in iCloud”, <https://developer.apple.com/support/allowing-users-to-manage-data/>

vpnMentor(2018), "Report: Only 34% of Websites in the EU are Ready for GDPR", vpnMentor(2018.04.05), <https://www.vpnmentor.com/author/shauli-zacks/page/2/>

MEMO

Premium Report